

[대만] 2016년 5월 수출현안 · 수입제도 모니터링

I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1. (통관/검역/라벨링/수출현안*)

○ 주요내용

「식품기구, 식품용기 또는 포장 표기 관련 규정」 2017년 7월부터 실시

대만 위생복지부는 식품안전위생관리법(이하 식안법) 제 26조 규정의 「표기필수인 식품기구, 식품 용기 또는 포장 품목」을 수정하고, 동시에 「식품기구, 식품용기 또는 포장 표기 관련 규정」을 공고하여, 2017년 7월 1일부터 식품 접촉면에 플라스틱 재질일 경우 판매 전 그 품명, 재질명칭, 내열온도 및 중복사용 또는 1회 사용 등의 내용 표기를 의무화하기로 함.

<식품기구, 식품용기 또는 포장 표기 규정시행일자>

중복성 플라스틱류 물병, 우유병 및 도시락(2012.7.21.)

1회성 사용 플라스틱류 식품 용기 및 포장(2013.7.21)

중복 사용 가능 플라스틱류 식품 용기(2014.6.19)

1회성 비닐류, 젓가락, 컵, 용기, 접시 등 5대 상품(2014.6.19)

식품 접촉면이 플라스틱(비닐) 재질의 식품기구, 식품 용기 또는 포장(2017.7.1)

○ 시사점

모든 업체 각 종류의 식품 용기 또는 포장 시 「식품기구, 용기, 포장 위생기준」 등의 규정을 따라야 하고, 동시에 사실에 근거한 표기를 함으로써 소비자에서 선택 구매를 할 수 있게 하며 식품 기구, 식품용기 또는 포장위생안전, 그 사용 방식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소비자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출처 : 위생복지부 식품약품관리국 2016.4.20.

II

품목별 통관 일반사항 / 주의사항

1. 육 류

가. 「신선육의 안전위생기준(生鮮肉品類衛生標準)」

☐ 본 기준은 가금류와 가축에 적용되며 아래의 항목을 포함

항목 분류	신선육류	냉동육류	신선내장류	냉동내장류
약물 잔류량	「동물용 의약품 잔류량 기준(動物用藥殘留標準)」에 의거함			
농약 잔류량	「농약 잔류량 제한 기준(禽畜產品中殘留農藥限量標準)」에 의거함			
특징	부패, 변색, 악취, 이취, 오염, 이물질, 기타 이상 등이 없어야 함			
라벨 규정	냉동 육류와 냉동 내장류도 식품관리위생법의 규정에 따라 식품보관방법과 조건을 명시해야 함			

자료 : 동식물방역검역국(動植物防疫檢疫局)

본 기준은 가금류와 가축에 적용됨

나. 「소, 양, 돼지 및 가금류의 중금속 함량 기준(牛羊豬及家禽可食性內臟重金屬限量標準)」

☐ 근거법규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10조

항 목	제한치 (습윤 중량)
납	0.5 ppm

자료 : 동식물방역검역국(動植物防疫檢疫局)

다. 동물용 의약품 잔류량 기준

☐ 본 규정은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15조 제2항에 따름

☐ 동물용 의약품 잔류량 시험은 표기에 사용된 마커를 포함하여 그 의약품과 의약품의 대사를 검사함

☐ 「동물용의약품 잔류량 기준(動物用藥殘留標準)」

- 본 규정은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 잔류량 최대 허용치 리스트 외의 의약품은 검출이 허용되지 않으며, 2015년 10월 16일 수정된 제 3조 조항에 따르면 명단에 있는 의약품 중 행정원 농업위원회에서

사용을 불허하는 의약품은 수입육류에만 적용됨.

- Eugenol의 생선 잔류 허용량 추가, Flavophospholipol의 소, 돼지, 닭의 근육, 간, 신장, 지방 및 우유와 달걀 등 40여 항목의 잔류 허용량 추가, Levamisole와 Tetramisole의 가금류유 등 항목의 잔류 허용량 추가, Tylosin의 가금류유 잔류 허용량 추가

III 통관문제사례

- 해당사항 없음